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44 호 2022. 5. 19.(목)

예 규

- 울산광역시 복구 예규 제24호[울산광역시 복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 1

공 고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656호[매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17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658호[공시송달 공고] 18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670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취소 공고] 20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671호[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1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681호[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2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권한대행 복구청장

김 정 익 (인)

2022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 예규 제24호

울산광역시 복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

울산광역시 복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본청·의회사무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소속 직원(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욕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 확보
7.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9. 그 밖에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①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제1항의 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북구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고충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소속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제7조(소속 직원의 책무) ① 소속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한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담당 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임원, 외부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고충상담원으로 한정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내부시스템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2차 피해를 포함한 조사 신청 등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및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을 구

성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동수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담당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⑨ 담당부서장은 조사 진행상황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9.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고충상담원, 외부전문가 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관련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조사결과에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및 전문가 3명

2.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룡·성폭력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재발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반영
- 울산광역시 복구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차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나. 지침 적용범위 확대(제2조)
- 다. ‘2차 피해’ 용어 정의 변경(제3조)
- 라. 상급자 및 소속 직원의 책무 신설(제6조, 제7조)
- 마. 고충상담창구 및 예방교육 등에 2차 피해 관련 사항 추가(제8조, 제11조)
- 바. 2차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제13조)
- 사.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추가(제16조)
- 아. 재발방지조치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추가(제20조)
- 자. 별지 서식 추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56호

매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02-4번지 일원 매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확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매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시 행 자 : 울산광역시청
3. 폐쇄한 지적공부 및 새로운 지적공부 내역 : 붙임참조

법정동	종전 지적공부			새로운 지적공부		
	필지수	면적(m ²)	지적공부	필지수	면적(m ²)	지적공부
매곡동	21	4,658	- 토지대장·지적도 : 19필지 - 임야대장·임야도 : 2필지	2	4,929.7	- 토지대장·지적도 : 2필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 2필지

4. 지적공부시행일 : 2022. 5. 12.
5. 공고기간 : 2022. 5. 13. ~ 5. 31.
6. 기타사항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41-7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운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13. ~ 2022. 5. 27.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1183-2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4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5. 27. (금)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화봉동1183-2번지 일원)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7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취소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600호로 공고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건에 대해 기초금액 정정에 따라 취소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71호

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05. 16.(월) ~ 2022. 05. 26.(목)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울산시티병원 증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송은의료재단 시티병원</p> <p>다. 시 공 자 : 한원종합건설(주)</p> <p>라. 설 계 자 : (주)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주)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07 (연암동 1261-6) ○ 대지면적 : 7,714,00㎡ ○ 연 면 적 : 8184,36㎡ ○ 규 모 : 지하1층 - 지상6층 ○ 세 대 수 : 의료시설 ○ 공사기간 : 2021. 07.01 ~ 2022. 09. 30(15개월) ○ 허 가 일 : 2021. 05. 11. ○ 착공신고수리일 : 2021. 08. 06. ○ 공 사 비 : 11,485,000,000 원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5,000,000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5,75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3	5,000,000	5,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3		5,000,000 원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05. 16.(월)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05. 26.(목) 15: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05. 26.(목) 15: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05. 26.(목) 15: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05. 27(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p>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p>	<p>60점</p>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p>합계</p>	<p>100점</p>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81호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우리 구 일원의 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당사금천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480번지 일원	179,340	-	179,340	'03.12.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9,340	-	179,340	100.0	'05.3.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480	-	160,480	89.5	
자연녹지지역	18,860	-	18,860	1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3	25	보조 간선 도로	5,410 (38)	대2-19	대2-28	일반 도로	강동구장	'98.5.11 울고82호	'08.5.15 울고129호
기정	중로	2	17	15~24	보조 간선 도로	11,926 (1,148)	13호 광장	중1-90	일반 도로	동구남목, 주전동	'00.3.4 울고33호	'07.10.18 울(동)고40호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94	소2-48	소2-48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82	대3-43	소3-57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3	6	국지 도로	72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609	7~8	국지 도로	72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3.07.25 울(북)고124호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08	중2-17	당사동 750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4	6	국지 도로	66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58	소3-14	당사동 536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6	6	국지 도로	152	소3-12	소3-14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372	중2-17	소2-35	일반 도로	당사 금천지구	'05.3.24 울고106호	'12.02.16 울고24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68	감) 270	10,698		
기정	205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321-3번지 일원	6,798	-	6,798	'05.3.24 울고106호	'21.12.23 울(북)고302호
변경	206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396번지 일원	2,475	감) 270	2,205	'05.3.24 울고106호	'12.11.29 울(북)고176호
기정	207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484번지 일원	845	-	845	'05.3.24 울고106호	'12.11.29 울(북)고176호
기정	208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09번지 일원	430	-	430	'05.3.24 울고106호	
기정	209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19-1번지 일원	290	-	290	'05.3.24 울고106호	
기정	210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38번지 일원	130	-	130	'05.3.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6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소 - A=2,475 → 2,205m²(감 27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지당대리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6	지당대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2번지 일원	61,149	-	61,149	'13.9.12 울고200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149	-	61,149	100.0	'13.9.12 울고200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56,613	-	56,613	92.6	
자연녹지지역	4,536	-	4,536	7.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	40	주간선 도로	27,647 (68)	대1-1 (온산공단)	북구 중산동시계	일반 도로	태화강 (태화산업앞)	'94.5.11 울고82호	'09.1.15 울고22호
기정	대로	2	52	30.5	보조 간선 도로	223 (128)	광3-3	울산송정 지구계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9.11.19 울고373호	
기정	중로	3	98	12	집산 도로	1,238 (248)	광3-3	송정동 253-3	일반 도로	북구 창평동	'98.5.11 울고82호	'07.12.27 울고451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00	광3-3	철도1호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기정	소로	3	119	6	국지 도로	153	중3-98	대2-52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09.11.19 울고373호
기정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42	광3-3	소3-119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기정	소로	3	121	6	국지 도로	85	대2-52	소1-2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09.11.19 울고373호
기정	소로	3	122	6	국지 도로	298	광3-3	소1-2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기정	소로	3	123	6	국지 도로	74	소3-122	소3-124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기정	소로	3	124	6	국지 도로	206	소1-2	소3-122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복선 철도	북구 중산동 구역계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구역계	시전역 (명동마을)	37,437 (130)	1,452,232 (2,670)	'02.11.19 울고17호	

주) ()는 구역내 철도임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8	녹지	완충 녹지	북구 송정동 799-4 일대	1,142	감) 99	1,043	'05.3.24 울고106호	'09.11.19 울고373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소 - A=1,142 → 1,043m²(감 9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최대 개발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3. 복성제전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8	복성제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17번지 일원	136,910	-	136,910	'03.12.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6,910	-	136,910	100.0	'05.3.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97,760	-	97,760	71.4	
자연녹지지역	39,150	-	39,150	28.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7	15~24	보조 간선 도로	11,926 (866)	13호광장	중1-90	일반 도로	동구 남목, 주전동	'00.3.4 울고33호	'07.10.18 울(동)고40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92 (50)	중1-90	중1-90	일반 도로	-	'00.3.4 울고33호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226	중1-90	소2-2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52	중1-90	소2-21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02	중2-17	구유동 642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06	중2-17	소3-2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46	중2-17	소2-24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164	중2-17	중2-1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196	중2-17	중2-1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4 울고106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표 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50	8	국지 도로	995 (244)	중2-17	중1-90	일반 도로	복성제 전 지구	'00.3.4 울고33호	'20.7.1 울고193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56	중2-17	구유동 111	일반 도로	복성제 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6	중2-17	소2-24	일반 도로	복성제 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4	공원	근린 공원	북구 구유동 27-1번지 일원	11,460	-	11,460	'05.3.24 울고106호	'09.4.9 울고125호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570	감) 811	8,759		
기정	239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212-9번지 일원	3,160	-	3,160	'05.3.24 울고106호	
변경	240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산65번지 일원	3,770	감) 105	3,665	'05.3.24 울고106호	
변경	241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135번지 일원	1,650	감) 706	944	'05.3.24 울고106호	
기정	242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92-1번지 일원	990	-	990	'05.3.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0	경관녹지	• 녹지축소 - A=3,770 → 3,665m ² (감 105m ²)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241	경관녹지	• 녹지축소 - A=1,650 → 944m ² (감 706m ²)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열람기간: 2022. 5. 19. ~ 2022. 6. 2.(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

4.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